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2
----------	-----

2018년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7. 서윤기 의원(찬성의원 32명)
2. 회부일자 : 2018. 10. 29.
3. 상정일자 : 제284회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11월 2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서윤기 의원)

1. 제안이유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여 4.19혁명,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에 앞장선 민주 유공자가 있어 가능하였음.
- 그러나 민주 유공자에 대한 예우과 지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공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임.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민주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4.19혁명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지원액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개정하여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

- 본 개정조례안은 4·19혁명,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에 앞장선 민주유공자가 있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기에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실시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민주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현재 월 5만원)을 상향 조정(개정 후 월 10만원)하기 위해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2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원 확대 필요성

□ 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원액 확대(안 제7조제4항)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여 4·19혁명, 6월민주항쟁, 5·18민주화 운동 등에 앞장 선 민주유공자가 있어 가능했으나 배려와 예우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음.
- 서울시 해당 조례에 근거, 민주화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17년 10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월 5만원)지급해 오고 있으며, 정부(국가보훈처)가 민주·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타 유공자보다 미흡하여 수당인상을 통하여 해당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강화가 필요함.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인원(485명)이 다른 보훈수당 인원에 비해 많지 않고 인원의 변동도 거의 없어 예산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을 보여짐.

■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지급 추이

- '17~'18년 평균 지급인원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예 산	연간 집행액	월평균 지급인원	전년대비인원
2017년(10~12월)	73	40	259명	
2018년(8월말 기준)	291	106	265명	6

- 최근 대상유공자 감소 추이(市 거주 전체인원, 국가보훈처 등록)
 - 4·19혁명(부상자·공로자) 및 5·18(부상자·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구 분(명)	'16. 8월	'17. 8월	'18. 8월
유공자 수	1,208	1,186	1,164
전년 대비	-	△22 (1.8%)	△22 (1.8%)

※ '16년 8월~'18년 8월까지 평균 감소율은 1.8%로 감소인원이 거의 없음

⇒ 2019년 비용추계에 '18년 지급대상 편성 인원(485명) 동일하게 적용

- '19~'23년 소요예산(5만원 → 10만원으로 증액시/지급대상 수 동일 적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급인원(명)	485	485	485	485	485	485
전년대비	-	-	-	-	-	-
소요예산(백만원)	291	582	582	582	582	582
전년대비증감	-	증291	-	-	-	-

○ 대상유공자 연령별 현황(전국 기준, '18.8월 국가보훈처 등록 기준)

합 계	65세 미만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세 이상
7,088	4,782	805	512	565	282	101	28	13	-

- 동 조례안은 서울 거주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예우수당 인상을 위해서 관련 항목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4·19혁명,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에 앞장선 민주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비해 오랜 기간 부족했던 점에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예우와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예우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1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우, 이정인, 김재형, 유 용,
채유미, 최정순, 홍성룡, 장인홍,
이경선, 김제리, 김상진, 김기대,
이승미, 이은주, 김정환, 박기열,
김희걸, 오중석, 장상기, 김광수,
이상훈, 임만균, 송재혁, 송아량,
노승재, 김동식, 강동길, 유정희,
정재웅, 전석기, 이병도, 권수정
의원(32명)

1. 제안이유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여 4.19혁명,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에 앞장선 민주 유공자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 그러나 민주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공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임.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민주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4.19혁명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지원액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개정하여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월 5만원” 을 “월 10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③ (생략)</p> <p>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유족 및 가족제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 하고,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지원 받고 있는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상이등급별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지급액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 <u>월 5만원</u>을 지급할 수 있다.</p> <p>1.~3. (생략)</p> <p>⑤ (생략)</p>	<p>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 ----- ----- ----- <u>월 10만원</u></p> <p>1.~3.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복지 및 생업지원)제4항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개정함에 따라 추가 지급액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455,000천원으로 연평균 291,000천원임
- 나. 추계결과 ≍ 1,455,000천원

- 총 비용 = $\sum_{i=1}^5$ (보훈예우수당 연간 추가 지급액) 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보훈예우수당 연간 추가 지급액 = 지급인원(485명) × 추가 지급액(5만원) × 12개월 = 291,000천원
 - 지급인원은 485명(4.19유공자 213명, 5.18민주유공자 93명, 특수임무유공자 179명)
 - 지급인원과 추가 지급액은 추계기간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함
-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보훈예우수당 추가 지급액 (조례안제7조제4항)	291,000	291,000	291,000	291,000	291,000	1,455,000
	소계(b)	291,000	291,000	291,000	291,000	291,000	1,455,000
□ 총 비용(b-a)		291,000	291,000	291,000	291,000	291,000	1,455,00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최경희

☎ 02-2180-7944

e-mail : hiru90@seoul.go.kr